

UCP 600 적용상 인수 및 연지급신용장 매입에 관한 문제점

The problems regarding negotiation of an Acceptance and Deferred Payment Credit under the
UCP 600

김종락(Jong-Rack Kim)

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양의동(Eui-Dong Yang)

청운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 | IV. UCP 600에 의한 매입업무 처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II. UCP 600상 매입에 관한 개정 내용과 UCP 500과 비교 | V. 결 론 |
| III. 신용장의 매입에 대한 사례 분석 | 참고문헌 |
| | Abstract |

Abstract

There were many changes regarding Negotiation of document under UCP 600.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Negotiation was changed. The UCP 500 stated "Negotiation means the giving of value for drafts and documents by the bank authorized to negotiation", but the UCP 600 defines "negotiation" as following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the UCP 600 the meaning of negotiation was more clear than UCP 500.

Second UCP 600 permits all deferred payment credits be discountable or negotiable.

This amended rule equated the deferred payment credit with banker's acceptance credit which was contrary with the nature and the practice of former deferred payment credit transaction.

Third, UCP 600 has also provided for reimbursement rights for nominated banks and a conceptual basis for protecting nominated banks against beneficiary fraud. In this paper, the problems regarding negotiation of document under UCP600 was studied and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occurring in applying UCP 600 in practical field was provided.

Key Words : negotiation, deferred payment credit, bank's acceptance credit, reimbursement. UCP 500,
UCP 600.

I. 서 론

신용장거래에 의한 지급방법은 일람지급(sight payment), 인수지급(acceptance), 연지급(deferred payment) 그리고 매입(negotiation)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번 UCP600에서는 일람지급(sight payment), 인수지급(acceptance), 연지급(deferred payment)을 합쳐서 결제(honour)라고 규정하고 매입에 대한 지급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정의를 UCP500에서의 “선적서류에 대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는 규정 대신에 UCP 600에서는 “선적서류의 구매(purchase of document)”라고 변경하였다. 그리고 매입시에 수익자에 대한 소구환청구권(recourse)을 할 수 있는지 유무를 삭제함으로써 확인은행이 아닌 한 매입은행은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확인은행에 대하여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인수은행 및 연지급은행에 대해서도 개설은행이 아닌 한 자신이 인수하였거나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선적서류에 대해서 사전지급이나 매입을 할 수 있게 변경하였다. 또한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에 대해서도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에 대해서 제시된 선적서류에 대하여 사전지급 또는 매입하였는지 불문하고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상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상환의무는 수익자에 대한 소구의무와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번 UCP600에서는 매입에 관한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특히 연지급은행의 할인 또는 매입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연지급신용장의 본래의 기능이나 특성을 없어지게 됨으로써 연지급신용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연지급신용장의 발행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매입에 대해서 UCP 600의 매입에 관한 내용을 UCP 500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고 특히 연지급신용장과 확인신용장의 매입규정의 실무적용상 문제점과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의 매입에 따른 상환청구권의 문제등에 관해서는 영국 및 프랑스의 관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매입에 대한 지급시 상환청구권에 관한 문제점 및 매입은행의 서류심사 방법, 기타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소구청구권에 대한 논문이 다수 산견되고 있다. 외국의 논문은 John Dolan¹⁾, 미국 Wayne Stats University 법과대학교수의 논문 “Negotiation credit under UCP600”에서는 UCP600에서 매입신용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James G Barnes²⁾, Baker & Mckenzie 선임연구원의 논문 “UCP600 and Bank's Respectability for Fraud”

1) John Dolan “Negotiation credit under UCP 600” ICC DC Insight Vol13 No.January-march p 2007

에서는 UCP600의 적용에 있어서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특히 사기거래의 경우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이었다. 국내논문으로는 이대우의 논문³⁾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인수신용장에 있어서 프랑스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확인은행이 인수신용장의 환어음을 인수만 하고 만기에 지급하기 전에 수익자의 사기거래가 밝혀진 경우에 확인은행은 환어음을 인수만 하였을 뿐이고 그 환어음에 대해서 최종적인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환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재필의 논문⁴⁾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지급신용장에 있어서 연지급은행이 선적서류 할인한 후, 그 만기 전에 개설은행에게 한 상환청구에 대해서 영국 상소법원과 미국법조인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오병석의 논문⁵⁾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에서 연지급신용장에서 만기 전 지정은행의 매입에 대해서 개설은행의 상환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오병석의 논문은 UCP 500상 연지급신용장에 관한 논문으로서 UCP 600의 적용시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러나 상기 논문들은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외국판례를 소개하였고 그리고 국내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철의 논문⁶⁾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물품불일치의 요건에 관한연구”에서는 UCP600하에서 서류심사시 물품의 명세서의 일치성 판단에 대한 사례별 고찰을 하였고, 양의동의 논문⁷⁾ “UCP600의 주요개정내용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번 개정된 UCP600의 항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실무적용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으로서 UCP600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기 논문들은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외국판례를 소개하였고 그리고 국내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UCP 600의 개정으로 변경된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UCP 500과 비교하여 실무에 적용할 시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례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James G Barnes “UCP 600 and Bank's Respectability for Fraud” ICC DC Insight Vol January-march p 2007

3) 이대우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국제상학」 제23권제4호 2008.12월 P131

4) 한재필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회 2004.4월 PP249-270

5) 오병석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제2호2004.4.PP249-270

6) 김종철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물품불일치의 요건에 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2008, 9, 27. PP239-261.

7) 양의동 “UCP600의 주요개정내용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7,3,27, PP381-399.

II. UCP 600상 매입에 관한 개정 내용과 UCP 500과 비교

1. UCP500과 UCP600상의 선적서류 매입의 정의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의 매입은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의 상환 전에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수하여 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적서류의 추심 전 매각을 통하여 수익자는 수출대금을 신속한 회수 할 수 있으며 매입은행측은 선적서류를 대금지급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고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될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의 상환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매입은행은 매입외환이라는 미지급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외환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매입외환이 확정채권으로 변경되고 해외에서 외화자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원화로 매각함으로써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지급방법에는 일람지급(sight payment), 인수지급(acceptance), 연지급(deferred payment) 그리고 매입(negotiation)이라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람지급, 인수지급, 연지급은 UCP600 하에서는 결제(honour) 라는 개념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고 매입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입에 의한 결제방법이 다른 결제방법에 비하여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독특한 지급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적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정의를 살펴보면 UCP500상에서는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환어음 또는 서류를 받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가의 지급 없이 서류를 단순히 검토 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가의 지급이 무엇을 의미 하느냐에 대하여 논쟁이 많았다. 대가(代價)라는 것이 선적서류의 매입대가나 아니면 매입하지 않고 서류를 담보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대출해주는 것도 매입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었으나 매입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의 구매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고 서류의 구매대가지급 이외의 대가지급은 신용정상 매입이 아니고 대출이라는 판례⁹⁾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신용장거래 실무상 선적서류의 제시에 의한 대금회수방법이 선적서류 매각에 의한 방법과 중개무역거래에 있어서 중개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하여 UCP600에서는 매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규정하였다.

8) UCP 500 Ar 10 (b)ii “Negotiation means the giving of value for the draft(s) and/or document(s) by the bank authorial to negotiate were examination of documents without giving of value does not constitute a negotiation.”

9) 대법원판결 96다 43713 선고1997, 8,29. 대법원판결 96다 37879 선고 1997, 8, 29.

“매입이란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를 지정은행이 구매(purchase)하는 것이다. 다만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가 그 만기일이 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선지급(advance fund)하거나 선지급 할 것을 동의함으로써 구매하여 한다.¹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UCP 600에서는 매입(negotiation)이란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선적서류나 환어음에 대해서 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UCP 500에서 단순히 환어음이나 선적서류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 즉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은 UCP600에서는 매입이 될 수 없다. 매입대금의 지급방법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금을 수익자에게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할 것을 동의함으로써 지급을 해야 하므로 대금의 추심 후 지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입은 매입하는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해야 하고 자기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민법상 혼동에 의하여 채권,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매입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UCP 600에서 매입의 성립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를 매입해야 한다.

둘째, 지정은행이 해야 한다.

셋째, 대금을 상환하기 전에 선지급하거나 선지급 할 것을 동의해야 한다. 단순히 인수하거나 연지급확약은 매입이 아니다

넷째, 지정은행이외의 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선적서류를 매입해야 한다.

다섯째, 수익자에 대한 소구청구권 (recourse to drawer)유무는 불문한다.

이와 같이 UCP600의 매입의 정의는 UCP500에 비해서 상당히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UCP500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매입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을 상환청구(reimbursement)를 할 수 있다. 실무상 매입은행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한 후 지급한 매입대금을 직접 개설은행으로부터 송금 받든가,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일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지시를 받아서 개설은행의 예금구좌에서 직접 차기하여 결제

10) UCP 600 Ar 2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a bank then nominating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 presentation by either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r befor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한다. 그러나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청구서를 발송하여 상환은행으로부터 대금상환을 받게 된다. 이 상환신용장의 경우에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받기 전에 수익자의 사기거래가 밝혀진 경우에 개설은행은 이 매입은행에 대해서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신용장거래는 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는 물품의 불일치나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하자사항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제시된 서류가 수익자가 위조 변조하여 제출하였거나, 수익자가 사기거래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량 물품을 선적하였거나 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사기거래를 이유로 법원에 대금지급금지가처분(injunction)을 받아서 지급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영국·미국의 판례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이기도 하다. 이를 사기거래예외의 원칙(fraud exception rule)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대금지급금지가처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수익자의 사기거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기거래 예외의 원칙은 사기거래 당사자인 수익자에게는 지급 거절할 수 있으나 매입은행이 이러한 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s)의¹¹⁾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개설은행은 사기거래 예외의 원칙에 불구하고 이러한 선의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판례이고 미국통일상법전의 규정이기도 하다.

또한 매입은 자유매입신용장이 아닌 한 지정은행만이 매입할 수 있으며 만일 지정은행이 아닌 비지정은행이 매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정은행의 매입은 매입으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아울러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매입 업무를 행한 지정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UCP규정을 살펴보면 UCP500 제9조a항에서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연지급약정을 하였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만기일에 지급한다. 인수를 약정하였으면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은 연지급확약서나 어음을 인수한 후 그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제10조 d항에서 “개설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정하거나 어떤 은행에 매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확인을 추가하도록 수권 또는 요청함으로써 그러한 은행이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환어음 인수 또는 매입을 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본 규칙의 조항에 따라 그러한 은행에게 대금상환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상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은행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게 만기일에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11) James G Barners “UCP 600 and Bank Responsibility for Fraud” De Insight vol13 No1.Jan-march. 2007 p20.

UCP 600 제7조C항(확인은행의 경우 제8조C항)에서는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기본적인 선언을 하고 그 상환청구권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UCP 600에 제7조 C항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일치된 서류를 결제하거나 매입하며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한 지정은행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인수나 연지급방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에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상환은 지정은행의 만기일 전에 지급하였거나 매입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만기일에 이루어진다. 개설은행의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수익자의 대한 의무와는 독립적이다”¹²⁾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UCP500과는 달리 인수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인수 또는 연지급은행이 만기일 전에 지급 또는 매입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개설은행은 그 만기일에 상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UCP 600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을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수익자의 사기거래에 의하여 봉쇄 된다고 하더라도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수익자의 결제청구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권리로부터 독립적이거나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므로 UCP 600은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수익자의 사기거래가 있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입은행은 이러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된 서류를 매입해야 하고 일치된 서류를 매입한 지정은행은 자신을 위하여 상환청구를 행사해야지 단순히 추심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추심을 위한 상환청구권은 수익자를 대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익자의 사기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소구청구권(遡求請求權)

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게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사기거래를 이유로 대금지급 거절통지를 하고 관련서류를 매입은행으로 반환하여 왔을 경우에, 매입은행은 서류의 매입을 신청한 수익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매입은행이 수익

12) UCP600 Art 7. c. Art 8.c “An issu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the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prepare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n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 of the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자에게 매입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소구청구권(right of recourse)이라고 한다. 이는 신용장에 소구청구불능(without recourse)이란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소구청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소구청구가능(with recourse) 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소구청구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UCP 500에서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소구청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UCP500 제9조 a항 4호, b항 4호에 의하면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매입을 약정하였으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및 또는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어음발행 및 또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소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 한다”¹³⁾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도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청구 없이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그 지급의무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지급이므로 당연히 소구청구권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소구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소구권 없이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 은행의 위임을 받아 지급하는 매입은행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소구권없이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의미가 있었다. UCP 600에서는 매입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에서는 전혀 소구청구권의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¹⁴⁾ UCP 600 제2조의 매입규정을 보면 “매입이란 지정은행이 그 지정은행 이외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과 일치된 제시서류를 수익자에게 그 지정은행으로 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이전에 자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할 것을 동의함으로써 매수(purchase)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소구청구권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 ‘소구청구 없음’이란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조건을 해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다. 다만 UCP 600에서는 확인은행의 대해서는 만은 소구청구 없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은행의 경우에는 매입시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소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에 대해서 소구청구를 할 수 없지만, 기타 지정은행의 경우에는 소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익자에게 소구청구권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자에게 소구청구가 가능할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소구청구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대신에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소송을

13) UCP 500 Art9(a)iv(b)iv “Issuing bank undertaking or confirming bank constitutes a definite” if the credit provides for negotiation to pay without recourse to drawers and/or bonafide holders, Draft(s) drawn by the beneficiary and/or document(s) presented and the credit

14) UCP 600 ART8.e “Present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bank or to any other nomination bank that they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 bank must negotiation, without recourse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confirming bank.”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매입은행에게 소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연지급은행이나 인수은행의 매입권한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연지급확인은행과 인수은행의 매입(買入)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연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할 경우 연지급확약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를 발급하고 그 연지급확약서에 약속한 만기일에 대금지급을 하는 신용장이다. 그리고 연지급확약은행은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지급확약은행은 그 성질상 만기 전에 선적서류를 매입하거나 선지급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국의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판례가 있다.¹⁵⁾

이는 연지급신용장은 지급신용장의 일종이므로 연지급신용장이 매입할 수 있다면 연지급신용장의 본래 기능인, 만기에 지급함으로써 수입자에게 지급을 연기해 주는 목적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은 연지급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 최종적의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 했을 경우라야 최종적인 지급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인수신용장의 인수와 마찬가지로 연지급확약은 단지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대금결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UCP500에서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연지급약정을 하였을 때는 신용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에 상환지급할 것을 확약한다”¹⁶⁾ 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지급신용장은 만기 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연지급은행에게 만기 전 지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봉쇄함으로써 매입이나 할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관한 국제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Banco Santander Case의 경우에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서 대금을 선지급 한 Banco Santander 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상환을 청구하였으나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사기거래를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영국법원은 “만기 전에 수익자의 사기거래 사실이 발견 되었으므로, Banco Santander은행의 대금지급은 연지급신용장의 성질상 매입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Banco Santander 은행은 사기거래예외원칙(fraud exception rule)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사기거래 방어권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결하여 상환청구권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미

15) 대법원 2003 1.24선고 2001 다 68266판결「2000」Lloyd's Report, Bank pp165-167

16) UCP 500 Art 9(a)ii (b)ii “An irrevocable credit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if the credit provides for deferred payment to pay on the maturity date(s) determinable in accordance with stipulation of credit”

국의 법률가들의 견해는 연지급은행은 연지급확약을 할 당시 사기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UCC의 신용장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청구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비록 연지급확약만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의의 양수인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UCP 600에서는 연지급신용장에서도 지정된 연지급확약은행이 자신이 확약한 선적서류에 대하여 선지급 하였거나 매입할 수 있다고 개정됨으로서 연지급은행의 매입이나 할인이 인정된 것이다. UCP 600 제12조 b항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어느 은행의 어음을 인수하거나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도록 지명함으로써 그 지정은행에게 그 은행에 의하여 인수된 어음이나 발행된 연지급확약서를 사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¹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지급은행의 매입이나 할인이 인정됨으로서 영국의 판례인 Banco Santander Cose는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연지급은행은 사기거래 예외의 원칙에 대한 개설은행의 방어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선적서류를 할인하거나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설은행들이 연지급신용장을 기피하고 개설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연지급신용장을 개설 하더라도 신용장의 특별조건에 매입금지문언(negotiation is not allowed)을 부가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특히 영국에 판례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연지급신용장의 발행을 꺼리는 동시에 발행할 경우 “이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이 금지된다” (“discount of this deferred payment obligation not allowed”)라는 문언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UCP 600에서 이러한 사실을 금지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연지급신용장의 매입 또는 할인허용조항이 국가에 따라서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5. 사기거래의 경우 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상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

연지급신용장은 UCP 600에 의하면 연지급은행이 확약한 연지급확약서에 대하여 할인이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지급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고 할인이나 매입을 할 경우 확인은행이 아닌 한 소구청구가능조건(with recourse)으로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지급은행은 자신이 매입하였거나 할인한 선적서류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당하였을 경우에 수익자에게 대금의 소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입 시 선적서

17) UCP 600 Art 12.b “by nomination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deferred or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류가 담보로 제공되고 개설은행이 지급거절 할 경우 수익자에게 반환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지급은행의 할인이나 매입은 연지급은행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만약에 수익자가 위조·변조 서류를 제공하였거나 사기거래를 행한 경우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이 사기거래에 의한 법원의 지급금지가처분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연지급은행이 할인이나 매입을 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연지급은행은 선의취득자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연지급은행은 수익자의 사기거래 여부에 불문하고 자신의 할인이나 매입에 대하여 개설은행에 대한 소구청구권이 보장 받는 되는 것이다. 만약에 연지급은행이 사전지급이나 매입을 하지 않고 연지급확약서만 발급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자로서 보호되지 못하고 따라서 개설은행이 사기거래 방어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 법원의 판례이었지만 이번 UCP 600의 개정으로 로 유명무실한 판례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이러한 연지급확약서만을 발급한 은행에 대해서도 사기거래의 방어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UCP 600에서는 “연지급은행이 매입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만기에 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지급신용장 거래에서 연지급은행의 상환청구권이 보장된다면 이를 이용한 약덕 수익자의 사기거래를 예방하는 효과는 상당히 감소될 수 밖에 없고, 수익자와 개설은행은 연지급신용장의 발행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수익자나 개설은행은 연지급신용장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장 상에 특별조건으로 만기 전 사전 지급이나 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든가, 연지급은행의 지정에 대하여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에 의한 사전 지급이나 매입은행에 대해서 자신의 본 지점이나 확인은행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자신의 본 지점이나 신용있는 확인은행이 없을 경우에는 연지급신용장에 발급을 제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지급신용장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이나 매입을 인정함으로써 인수신용장과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단순히 환어음이 있느냐의 유무의 차이 외에는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지급신용장에 독특한 기능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연지급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할 경우 개설은행은 인수신용장 발행으로 유도할 것이고, 부득이 연지급신용장의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전지급금지 또는 매입금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기거래의 방어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기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원은 지급금지가처분을 개설은행에 대해서 명령할 것이 아니고 연지급확인은행 앞으로 지급금지가처분 명령을 발함으로써 연지급은행이 처음부터 사기거래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¹⁸⁾

Ⅲ. 신용장의 매입에 대한 사례 분석

1. 인수신용장매입에 관한사례

인도에 있는 알루미늄 수입회사 Namco사는 1998년 3월 18일에 Canara Bank에서 수익자를 프랑스 수출회사 Soficom사로 하고 신용장 지급조건은 B/L발행 후 180일 후에 지급하는 기한부 인수신용장을 발행하였고 이 신용장을 프랑스의 Credit Lyonnais은행이 확인을 하여 확인신용장이 되었다. 1998년 3월 3일에 프랑스 수출회사 Soficom사는 물품을 선적한 후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Credit Lyonnais Bank의 자회사인 BDEI라는 할인회사에 제시하고 1988년 4월 1일에 어음의 할인을 받았다. 그 후 이 BDEI사가 할인한 서류를 확인은행인 Credit Lyonnais Bank에 제시하였는데 이 Credit Lyonnais Bank는 1998년 4월 9일에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함을 인정하고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한 후 만기일(1998년 9월 15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게 송부하였다. 지급 만기일에 BDEI사는 인수된 어음을 Credit Lyonnais Bank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다. 그 첫째 이유는 아직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전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이유는 환어음 만기일이 1998년 9월 24일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후 신 만기일인 1998년 9월 24일에는 다시 사기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하였다. 그 후 Credit Lyonnais Bank는 회사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BDEI사가 역시 Credit Lyonnais Bank의 자회사인 Credit Forfeiting사와 합병이 됨으로서 BDEI사는 현재 화환신용장상의 지급클레임을 포함해서 회사가 받을 모든 자산을 Credit Forfeiting사로 이관시켰다. 그리고 Credit Lyonnais Bank는 그 후 자회사인 Credit Forfeiting사를 흡수함으로써 해서 신용장상 채권 채무가 모두 Credit Lyonnais Bank로 흡수된 것이었다. 이 Credit Lyonnais Bank가 신용장통일규칙에 근거하여 개설은행인 Canara Bank앞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첫째 소송당사자 간에는 사기거래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었으며 둘째 사기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확인은행인 Credit Lyonnais Bank는 신용장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인수만 한 상태로써 개설은행에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논쟁요소로 되고 있었다. 즉 확인은행이 환어음을 인수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만약 만기일 전에 사기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이 없었으므로 개설은행은 그 상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18) 서울지법 1996.7.11선고 93가 합 50708 서울지법 1998.1.15선고 95가합 105237
이대우, 양의동저「신용장론」도서출판두남 2009년 2월5일 p 334

2.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내용

이 사건에서 확인은행인 Credit Lyonnais Bank는 UCP에 근거하여 개설은행에 상환청구를 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첫째 동 은행은 사기거래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미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였으므로 신용장에 근거하여 이행의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따라서 사기거래에 불문하고 개설은행에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지방법원(상사법원, The Commercial Court)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그리고 대법원(the Court of Cassation)에서는 Credit Lyonnais Bank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인수신용장에서는 인수된 어음의 지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지만 대금지불이 있기 전에 사기거래가 발생함으로써 화환신용장의 인수은행의 지급의무이행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다만 그 환어음의 신용장의 당사자가 아닌 선의의 제3당사자인 어음소지인에 의해서 제시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는 확인은행은 화환신용장에 의한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기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신용장에 의한 어떠한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반적 규칙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확인은행은 언제 인수신용장에 의한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느냐가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만약에 사기거래가 지급의무 이행 전에 발생하였다면 신용장에 의한 지급의무도 소멸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반면에 지급의무 이행 후에 사기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이행된 신용장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확인은행은 이미 인수한 환어음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만이 인수신용장에 의한 확인의무의 이행이 된다고 결정하고서 Credit Lyonnais Bank는 사기거래가 발생했을 당시에 환어음을 인수했을 뿐이고 지급은 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장에 의한 확인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서 동 은행의 상환청구권을 부인하였다.¹⁹⁾ 그러나 이 판결은 신용장의 제도와 채권양도의 일반법과의 차이점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로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UCP600의 개정으로 수익자의 입장을 보다 강화하여 문제가 해결한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상환은행은 만기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상환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Dr. Georges Affaki, "French Supreme Court on discounting L/C acceptance., ICC DCINSIGHT, ICC Pub, VOL.12, NO.2, April-June, pp.11-13.

3.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사례

1) 영국대법원의 판결

프랑스의 Napa Petrol, Ind는 1998년 6월 5일에 Banco Paribas에서 연지급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수익자는 영국의 Bayfern Ltd이고 선적서류는 발행일자 후 180일 후에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 신용장을 런던의 Banco Santander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확인을 추가하였다. 그 후 Bayfern의 요청에 의해서 Santander는 1998년 6월16일에 제시된 서류를 할인하고 Royal Bank of Scotland의 Bayfern의 계정에 US\$18.6Million을 이체하였음을 확인 통보하였다. 그런데 1998년 6월24일에 Paribas는 Santanda에게 제시된 서류에 허위서류가 포함된 사실을 통보해 왔다. Paribas는 만기지급일에 Santanda의 상환청구를 거절하였으며 Santanda는 영국법원에 대금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상소법원은 확인은행인 Santanda는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은행으로서 그 만기일에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며 만기일 전에 사기거래가 확정통보 되었으므로 개설은행은 사기거래예외원칙에 따라서 지급 거절할 수 있다라고 판결²⁰⁾하였다. 결국 연지급신용장에서의 할인지급은 개설은행의 수권사항이 아니며 확인은행은 연지급신용장에 할인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확인사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확인은행에게는 연지급신용장의 할인 또는 매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 및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판결²¹⁾에도 "연지급은행에게 매입에 대한 수권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매입의 권한이 없고, 특별히 매입에 대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연지급신용장의 매입은행의 지위는 수익자의 양수인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수익자의 위조서류에 대하여 사기거래예외원칙상 상환청구권이 거절된다. 따라서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후에는 매입여부에 불구하고 그 만기일 전에 사기거래가 발생한 것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는 개설은행에 대해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2) 프랑스대법원 판결

또 하나의 사례로서 벨지움의 GEM회사는 프랑스의 J회사에게 상품을 수출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은 취소불능연지급신용장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프랑스의 J회사는

20) 한재필 「화환신용장론」, 2008, (주)두남, p.322.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연구, 「무역학회지」 2007.2.28, pp.211-240. Jim Barnes "The Santanda case,, DC Insight, Vol.6, No.3 Summer 2000, pp.2,

21) 대법원2003.1.24.선고 2001다68266판결 오병석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 ,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호 2004.4pp249~270.

프랑스의 BNP은행에게 요청하여 벨지움에 있는 GEM회사를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연지급신용장을 1984년 1월 26일에 개설하여 벨지움의 BCG은행의 확인을 받아 동 은행을 통하여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은 서류가 제시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하기로 확인은행이 연지급확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BCG은행은 수출회사인 GEM사로부터 1984년 2월 7일에 서류를 제시 받고 1984년 5월 7일에 지급하기로 연지급확약을 한 후 그 만기일 전인 1984년 2월 7일에 신용장금액을 할인하여 주었다. 그 후 수입상인 J사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인도받고 운송회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확인해 본 결과 서류상의 상품과 수량에서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신용장에는 명시된 30개의 상자속에 상품이 5,080로 되어있었는데 실제로는 480개 밖에 없었다. 그래서 J회사는 수입상이 제시한 서류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만 수출상의 사기를 이유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에게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대법원은 “GEM사가 신용장상의 이익을 받기위하여 실제로 발송한 상품보다 많은 수량의 상품인도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확인은행이 아직 신용장상의 약정을 이행하기 전이므로 개설의뢰인이 이러한 사기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결국 연지급확약은행인 확인은행이 만기일 전에 수출회사에게 할인해 준 것은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연지급확약만 한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지급이 없었으므로 수입회사는 사기거래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3)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

이 사건은 한국의 (주)일경교역이 프랑스의 살 잘텍스와 미화 81,650달러에 해당하는 직물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후 수입대금지불을 위하여 BNP Pariba은행에서 취소불능 연지급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이 신용장조건은 선적일로부터 90일에 지급하는 연지급신용장으로서 (주)일경교역은 수출물품의 품질과 양이 매우 떨어지는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위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선적서류를 BNP Pariba은행에 제시하여 미화 79,150.5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수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잘텍스는 과리상사재판소에서 사기거래에 의한 지급금지명령가처분을 받아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국내법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취소 및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매입수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고 개설은행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부인당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매입지정은행이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연지급신용장

의 지정은행이 서류를 매입하더라도 개설은행은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된 것이므로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하여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용장은 대금지급이나 서류매입에 관한 지정은행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문면상 자유매입에 대한 수권도 없는 반면 오히려 대금의 지급은 개설은행에서만 가능하다는 점과(Available with ...at ours accounts) 서류의 제시장소와 신용장의 유효기간의 개설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신용장에 대해서는 대금의 지급이나 서류매입에 의한 은행의 지정이나 수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인수신용장의 경우에는 환어음 인수 후 매입을 했든가 매입된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만기 전에 사기거래가 발생한 경우라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매입을 하지 않고 다만 인수만 한 경우에는 만기 전 사기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판결²²⁾하고 있다. 즉 똑 같은 사안에서 인수신용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어음의 매입 또는 할인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확인은행이 사기거래에서 선의로 환어음을 인수 또는 할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기거래의 예외원칙의 적용이 될 수 없고 상환청구권이 허용되는데 반해서 매입이나 할인을 하지 않고 타 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인이나 매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지급신용장을 할인하거나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는 개설은행의 수권 밖의 행위로서 할인 또는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매입은행은 선의의 소지인의 지위도 인정될 수 없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은행이 할인 매입한 것을 단순히 연지급확약만 했을 경우에는 인수신용장의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이상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에 있어서 인수 또는 연지급확약만 하고 그 만기일 전에 대금지급이 없었던 경우에는 수익자의 사기거래가 밝혀질 경우에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이었고 연지급은행의 경우에는 만기전 할인이나 매입이 안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한 것이었다.

22) [2000] Lloyd's Report Bank165,pp165~167.

IV. UCP 600에 의한 매입업무 처리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UCP 600상 비지정은행의 매입

UCP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을 제외하고 지정은행만이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지정은행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UCP상 매입으로 인정 될 수 없고 단순히 수익자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으로 행한 대출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지정은행의 매입은 UCP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UCP상 서류심사규칙이나 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매입제한신용장의 경우에 비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지정은행 앞으로 재매입(renegotiation)을 위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유효기일이나 서류제시기간, 지급거절의 경우 서류심사기간 등을 재매입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정신용장일 경우 국내 비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게 요청하여 신용장의 매입지정 규정을 해제하여 줄 경우 비지정은행이 지정은행이 발행한 지정은행매입해제서를 첨부하며 직접 매입할 경우 개설은행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다.²³⁾ 이 지정은행해제서(Release Letter)에 의한 매입은 신용장 조건의 변경으로서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수익자가 지정은행과 협의하여 지정은행의 지정은행해제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는 개설은행이 이러한 조건변경서에 의한 매입을 인정 할 것이냐의 유무는 전적으로 개설은행의 독자적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I.C.C는 이러한 지정은행해제서에 의한 비지정은행의 매입은 제출된 서류나 신용장조건에 일치할 경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²⁴⁾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수출회사가 신용장상 매입제한은행인 통지은행과 거래관계가 없을 경우에 매입제한은행에 가서 매입하는 것을 꺼리고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매입하는 관행이 있다. 이와 같이 매입제한해제서를 첨부하여 비지정은행이 매입하는 것은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거절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23) UCP 600 Art 10 "a Except an otherwise provided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if any, and beneficiary."

24) ICCpub 489.case No196

2. 매입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소구청구권(遡求請求權)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에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UCP 600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최종적인 지급인이므로 매입을 할 수 없으며, 확인은행의 경우에는 매입시 수익에 대한 소구청구권 없이 매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은행이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될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의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하여 소구청구권을 가지고 매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음법²⁵⁾에 의하면 “어음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모든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구거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신용장에 소구금지문언이 있더라도 수익자에게 소구청구(recourse)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국내법 우선주의에 의하여 UCP보다는 국내 어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상법전상 환어음법²⁶⁾에 의하면 발행인이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without recourse)는 문언을 기재하여 소구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구금지문언을 환어음상 기재함으로써 수출자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소구청구의 부담 없이 서류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선적서류의 매입의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의한 물품을 매입한 것이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거절이 있을 경우에 이 물품을 매각하여 대금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설은행으로 지급거절이 있을 경우에 수익자에게 대금회수청구를 한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환매조건부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함으로써 매입은행의 서류심사의무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구금지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소구가능조건은 수익자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회사를 위해서는 소구가능조건은 개정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소구금지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소구청구 할 수가 없음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매입은행과 수익자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소구청구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다면 UCP상의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5) 한국 어음법 제9조

26) UCC Art 3-414 (e), 3-415 (b)

3. 연지급은행과 확인은행의 매입 및 할인

연지급신용장은 원칙적으로 매입이나 할인할 수 없는 신용장으로써 연지급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그 연지급확약서의 만기일에 지급하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이번 UCP 600에서는 연지급신용장도 자신이 발행한 연지급확약서를 사전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²⁷⁾ 이와 같이 연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이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연지급은행이 자신의 채무를 다시 매입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채권 채무가 동일은행에 속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채권·채무가 동일은행에 속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 채무는 민법상 혼동에 해당하여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UCP상 매입의 정의를 보면 지정은행은 그 지정은행 이외 은행 앞으로 발행된 어음과 일치된 서류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지급은행이 개설은행 앞으로 작성된 수익자의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는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연지급확약서가 발행된 서류를 매입하거나 할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지급은행이 해외은행일 경우에 국내의 다른 은행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은행이 확인은행이면서 연지급은행일 경우에도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서류를 매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영연방은행의 경우에 연지급신용장을 발급하면서, “사전지급이나 매입이 금지된다”는 문언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매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연지급신용장의 할인이나 매입을 인정하는 것은 수출자가 자금의 조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자금의 조기 활용을 원한다면 인수 신용장이나 일람불신용장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연지급 신용장을 이용하면서 연지급신용장에 반하는 할인이나 매입을 인정한 것은 연지급신용장의 성질에 반할 뿐 아니라 수입자나 개설은행에게 악덕 수출업자의 사기거래에 대한 대항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이나 인수신용장은 수입자 측에서는 자금을 연지급기간 만큼 늦게 지불해도 되는 것이므로 선적서류를 받고 통관한 후 물품을 확인하여 처분하고서 연지급기간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결국 수입자는 물품을 확인한 후에 대금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연지급은행은 연지급확약서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수출자의 사기거래가 있던가 위·변조서류라도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입자 측에서는 연지급신용장을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이에 대한 활성화는 상당히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연지급신용장이나

27) UCP 600.Art 12.b.

4. 인수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의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은 비록 선적서류나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선적서류에 대하여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후 사전지급이나 매입을 하기 전에 수입자 측이나 개설은행이 물품을 통관한 후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류가 위·변조된 것을 발견할 때 법원에 지급금지 가처분을 얻어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이때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은 선적서류를 인수하였거나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하였다는 것만으로 개설은행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영국이나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인데 이는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이 자금의 실질적인 지급이 없고 다만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거래가 밝혀진 악덕 수출업자에게 만기에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사기거래를 돕는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은 실질적인 자금의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28) 신용장편에서는 환어음을 인수하였거나 연지급확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출업자를 위한 것이고 수출회사의 자금 활성화 내지는 그 보호에 더 비중을 둔 규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 UCP 600에서는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인수나 선적서류의 연지급확약서에 의하여 사전지급이나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인수은행과 연지급은행의 상환청구권도 UICP에서는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인수은행이나 연지급확약은행이 만기 전에 사전지급이나 매입하였는지 불문하고 만기에 지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환청구권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상환청구권과는 별개로 독점적이다”²⁹⁾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의 상환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사기거래의 당사자로서 지급금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의 상환청구권을 보호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나 개설은행 측으로서는 이러한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의 사기거래 방어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인수은행이나 연지급은행이 사전지급이나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사기거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선적서류를 수령하기 전에 그 사기 사실을 안다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회사가 신인도가 약한 경우는 이러한 연지급신용장이나 인수신용장의 발급을 자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수입자가 신용도가 좋을 경우에만 이러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수입자는 인수신용장이나 연지급신용장을 거래

28) UCC95 Art5-109 (a) (i) (ii) Because issuers may be liable for wrongful dishonour if they are unable to prove forgery or material fraud

29) UCP600 Art 7.c. Art8.c.

하기 전에 수출자의 신용도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하며 이에 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연지급신용장이나 인수신용장의 경우에 사전지급이나 매입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단순히 연지급확약이나 인수만 한 경우에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기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기거래시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 론

이번 개정된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의한 결제방법 중 매입(negotiation)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정의를 하였다. 즉 매입의 개념에 대해서 환어음이나 선적서류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giving a value)이라고 규정하였던 UCP 500에 비하여 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매입(purchase)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출의 개념과 분명히 구분하였다.

둘째, 지정매입은행의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수익자에 대한 소구청구권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함으로서 수익자의 사기거래 시에도 지정은행의 상환청구권을 보호하고 있다. 다만 그 매입은행이 선의로 매입함으로써 선의취득자(bona fide holder)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

셋째, 확인은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의 개념을 수익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조건으로(with recourse)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매입 시 수익자에게 소구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만약에 신용장에 소구권 없는 신용장일 경우에는 소구청구권 없다는 조항을 해제하도록 수익자에게 요구하고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둠으로서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선적서류라는 담보도 제공받고 만약에 개설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의 소구청구할 수 있는 2중 보호장치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연지급은행의 할인 및 매입을 허용하였다. 원래 연지급신용장은 신용장의 성격상 매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UCP600에서는 연지급은행이 자신이 연지급확약을 한 것을 사전 지급하는 할인하거나 타 은행이 연지급확약한 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연지급신용장의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수출회사의 자금조달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지급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의 사기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연지급확약서의 발행 후 만기일 사이에 사기거래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연지급은행은 실제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환청구권이 보호되지 못하

였다. 이는 영국의 판례이고 미국의 경우는 연지급확약은행도 사기거래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UCP 600의 개정으로 연지급확약은행은 연지급확약서 발행 후 할인이나 매입이 이루어 졌느냐의 유무를 묻지 않고 상환 청구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연지급확약만으로도 상환청구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영연방국의 은행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연지급신용장에 할인이나 매입 불가함(this credit not allow discount or negotiation)이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기거래의 방어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번 UCP 600의 개정취지가 활용되지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³⁰⁾ 따라서 국내 수출회사의 경우 해외에서 연지급신용장을 수령할 경우 관련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신용장 발행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고 수입할 경우에 연지급신용장을 발행할 경우에는 수출자사의 사기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사기거래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수출자의 신용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신용장론」박영사 2003.
 박대위, 「신용장론」법문사, 2005.
 서헌제, 「국제거래법」법문사, 1996.
 유중원, 「신용장의 법리」육법사, 1993.
 이대우·김종락 공저, 「국제상거래론」두남, 2003.
 이대우·양의동 공저, 「신용장론」두남, 2007.
 임홍근, 「화환신용장의(의) 법적 구조」삼지원, 1991.
 정찬형, 「영미어음 수표법」고려대학교출판부
 최준선, 「국제거래법」삼영사, 1996.
 한주섭, 「신용장론」동성사, 1993.
 김종칠,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물품불일치의 요건에 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2008,9,27.
 오병석,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호

30) Jhon Dolan “Negotiation credit under UCp 600” De insight vol13 No1 January-march ,2007 p213

- 2004.4.
- 양의동 “UCP600의 주요개정내용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7, 3, 27.
- 이대우, “인수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사례” 「국제상학」 제23권제4호
2008.12.
- 한재필, “연지급확약의 할인에 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제2회 2004.4.
- 及川竹夫, 「信用狀取引の實態」ダイヤモンド社, 1984.
- 東谷芳和「貿易取引と信用狀」, 經濟法令研究所, 1989.
- HC Gutteridge and Maurice Megrah,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 Ltd, 1984
- Raymond Jack “Documentary Credits“ 2nd ed, Butterworths, 1998.
- Schmittoff. Clive M, “Export Trade“ 7th ed, London, Stevens and Sons, 1980.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Problems Querise”
I.C.C Publishing S.A, 1993.
- _____,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 ICC pub No.415, 1993
- _____, “Opinion(1993-1998)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I.C.C Banking Commission, “ I.C.C Pub.S.A, 1998.
-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 under UCP500, Charles del Busto I.C.C. Pub NO.535, 1995.
- John Dolan, “negotiation credit under UCP600.” ICC DCINSIGHT Vol13 No.1 Jan-march 2007.
- James G Barner “UCP600 and Bank Responsibility for Fraud” ICC DCINSIGHT Vol1 Jan-march
2007.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500.1993.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 600.2007.
- ICC DCINSIGHT, ICC Pub, Vol12, No2, April-June 2006.